

심의결과 원안대로가결

의안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제 의 자
제 48 호	제 28 차	1988.12./	총재 김 건

의안 "금융기관 여수신이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의결사항 "금융기관 여수신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제의관계
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7조, 제64조, 제65조

제의취지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자유화와 수신금리 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금리의 자금수급조절 및 배분기능을 제고하고 금융의 자율화와 국제화에
부응하는 한편 금융산업의 발전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

512

36
48

참고사항 제의관계 법규조항 발해

한국은행법 제7조

- ① (생 락)
- 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권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 운영,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
- 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 지시를 발할 수 있다.
- ④ - ⑤ (생 락)

한국은행법 제64조

-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의 대출 기타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 기타 요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
- ② (생 락)

한국은행법 제65조

-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기타 지급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
- ② (생 락)

금융기관 여수신이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조 - 제5조 (생 략)		제1조 - 제5조 (현 행 과 같 음)																																											
<별 표> 수신이자 및 기타지급금의 최고율		<별 표> 수신이자 및 기타지급금의 최고율																																											
<table><tr><th>구 분</th><th>이 율</th></tr><tr><td>1. 정 기 예 금</td><td>연10.0%(지방은행은 연10.5%)</td></tr><tr><td>2. 저 축 예 금</td><td>연6.0%(실명의 개인에 한하며 1인당 3,000만원이내, 다만, 이자원가로 인한 초과액은 예외로 함)</td></tr><tr><td>3. 자유저축예금</td><td>연12.0%(실명의 개인에 한하며 1인당 2,000만원이내, 다만, 이자원가로 인한 초과액은 예외로 함)</td></tr><tr><td>4. 가계종합예금</td><td>연6.0%(실명의 개인에 한하며 1인당 1,000만원이내, 다만, 이자원가로 인한 초과액은 예외로 함)</td></tr><tr><td>(신 설)</td><td></td></tr><tr><td>5. - 10.</td><td>(생 략)</td></tr><tr><td>11. 상 호 부 금</td><td>연 10.4%</td></tr><tr><td>(신 설)</td><td></td></tr><tr><td>12. 상업어음일반매출</td><td>연 8.5%</td></tr></table>		구 분	이 율	1. 정 기 예 금	연10.0%(지방은행은 연10.5%)	2. 저 축 예 금	연6.0%(실명의 개인에 한하며 1인당 3,000만원이내, 다만, 이자원가로 인한 초과액은 예외로 함)	3. 자유저축예금	연12.0%(실명의 개인에 한하며 1인당 2,000만원이내, 다만, 이자원가로 인한 초과액은 예외로 함)	4. 가계종합예금	연6.0%(실명의 개인에 한하며 1인당 1,000만원이내, 다만, 이자원가로 인한 초과액은 예외로 함)	(신 설)		5. - 10.	(생 략)	11. 상 호 부 금	연 10.4%	(신 설)		12. 상업어음일반매출	연 8.5%	<table><tr><th>구 분</th><th>이 율</th></tr><tr><td>1. 정 기 예 금</td><td>연10.0%(지방은행은 연10.5%) 다만, 2년이상 만기의 경우에는 각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td></tr><tr><td>2. 저 축 예 금</td><td>연5.0%(실명의 개인에 한하며 1인당 3,000만원이내, 다만, 이자원가로 인한 초과액은 예외로 함)</td></tr><tr><td>3. 자유저축예금</td><td>연11.0%(실명의 개인에 한하며 1인당 2,000만원 이내, 다만, 이자원가로 인한 초과액은 예외로 함)</td></tr><tr><td>4. 가계종합예금</td><td>연4.0%(실명의 개인에 한함)</td></tr><tr><td>5. 기업자유예금</td><td>연 5.0%(법인과 개인기업에 한함)</td></tr><tr><td>6. - 11.</td><td>(현 행 과 같 음)</td></tr><tr><td>12. 상 호 부 금</td><td>연 11.0%</td></tr><tr><td>13. 주 택 부 금</td><td>정기적금 최고이율</td></tr><tr><td>14. 상업어음일반매출</td><td>연 6.0%</td></tr></table>		구 분	이 율	1. 정 기 예 금	연10.0%(지방은행은 연10.5%) 다만, 2년이상 만기의 경우에는 각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2. 저 축 예 금	연5.0%(실명의 개인에 한하며 1인당 3,000만원이내, 다만, 이자원가로 인한 초과액은 예외로 함)	3. 자유저축예금	연11.0%(실명의 개인에 한하며 1인당 2,000만원 이내, 다만, 이자원가로 인한 초과액은 예외로 함)	4. 가계종합예금	연4.0%(실명의 개인에 한함)	5. 기업자유예금	연 5.0%(법인과 개인기업에 한함)	6. - 11.	(현 행 과 같 음)	12. 상 호 부 금	연 11.0%	13. 주 택 부 금	정기적금 최고이율	14. 상업어음일반매출	연 6.0%	- 2년이상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자유화 - 저축예금 최고이율 인하 : 1%p - 자유저축예금 최고이율 인하 : 1%p - 가계종합예금 최고이율 인하(2%p) 및 예치한도 폐지 - 기업자유예금 신설 - 호 정비 - 상호부금 최고이율 조정 - 주택부금 최고이율 규정 - 상업어음일반매출 최고이율 인하 : 2.5%p	
구 분	이 율																																												
1. 정 기 예 금	연10.0%(지방은행은 연10.5%)																																												
2. 저 축 예 금	연6.0%(실명의 개인에 한하며 1인당 3,000만원이내, 다만, 이자원가로 인한 초과액은 예외로 함)																																												
3. 자유저축예금	연12.0%(실명의 개인에 한하며 1인당 2,000만원이내, 다만, 이자원가로 인한 초과액은 예외로 함)																																												
4. 가계종합예금	연6.0%(실명의 개인에 한하며 1인당 1,000만원이내, 다만, 이자원가로 인한 초과액은 예외로 함)																																												
(신 설)																																													
5. - 10.	(생 략)																																												
11. 상 호 부 금	연 10.4%																																												
(신 설)																																													
12. 상업어음일반매출	연 8.5%																																												
구 분	이 율																																												
1. 정 기 예 금	연10.0%(지방은행은 연10.5%) 다만, 2년이상 만기의 경우에는 각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2. 저 축 예 금	연5.0%(실명의 개인에 한하며 1인당 3,000만원이내, 다만, 이자원가로 인한 초과액은 예외로 함)																																												
3. 자유저축예금	연11.0%(실명의 개인에 한하며 1인당 2,000만원 이내, 다만, 이자원가로 인한 초과액은 예외로 함)																																												
4. 가계종합예금	연4.0%(실명의 개인에 한함)																																												
5. 기업자유예금	연 5.0%(법인과 개인기업에 한함)																																												
6. - 11.	(현 행 과 같 음)																																												
12. 상 호 부 금	연 11.0%																																												
13. 주 택 부 금	정기적금 최고이율																																												
14. 상업어음일반매출	연 6.0%																																												

현행	개정 (안)	비고
(신 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8.12.5.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88.12.4 이전에 계약된 상호부금 및 2년이상 만기 정기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증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 시행일이전 계약된 2년이상 만기 정기예금 및 상호부금에 대하여는 증전이율 적용